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16
----------	-------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의자 : 임종성 · 강훈식 · 민홍철

전현희 · 노웅래 · 안호영

이찬열 · 윤후덕 · 조승래

소병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활용도 측면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교통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는 여러 자료를 융합하여 분석해야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와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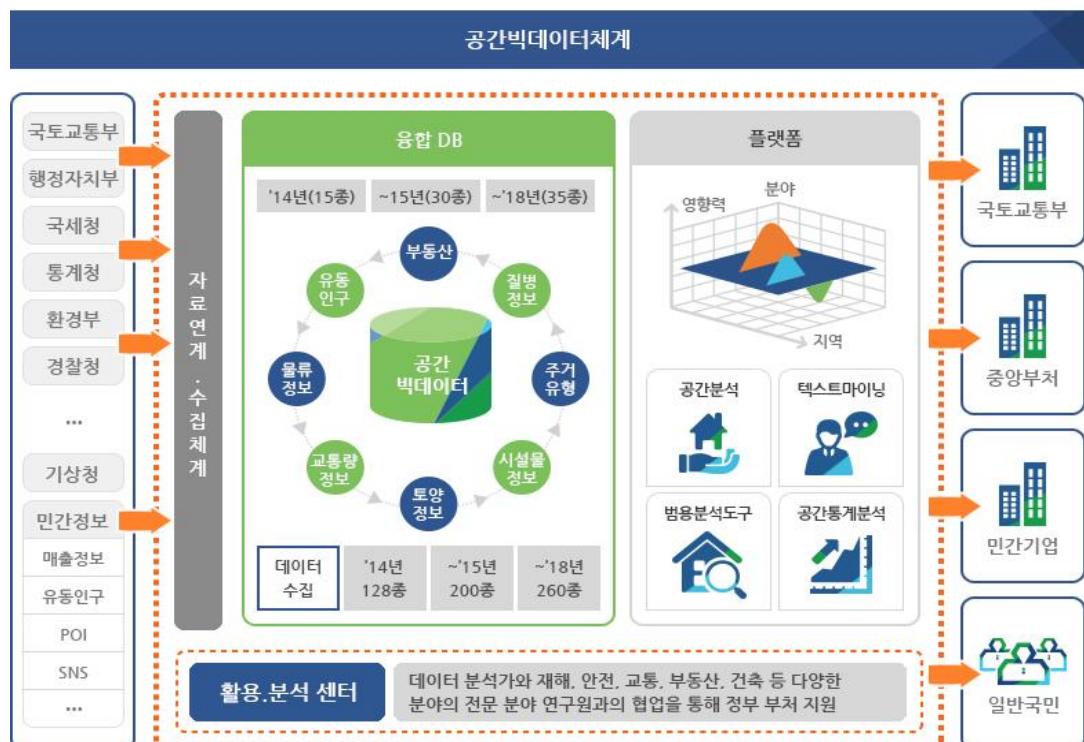
이에 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통합 활용 환경을 구축하

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1 신설).

[참조 1: 공공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현황]

주무부처	법령	시스템 명칭	시스템 별칭
행정안전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 운영지침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	해안
국방부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실시간 영상인식을 위한 국방 빅데이터 플랫폼	D-NET
특허청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KIPRIS
기상청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날씨마루(가안)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빅데이터캠퍼스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공간정보오픈플랫폼	VWORLD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도시계획정보서비스	UPIS

[참조 2: 공공빅데이터 관리 및 제공 사례 : VWORLD 구성]



출처 : 국가공간정보통합서비스 홈페이지(<http://www.nsdi.go.kr/>)

### [참조 3: 교통 빅데이터 관리 및 제공 시스템 분산 관리 현황]

분야	시스템명	보유 데이터
종합	교통안전정보시스템	교통사고자료, 운수종사자관리정보 등
종합	국가대중교통정보(TAGO)	시내/고속/시외/공항 버스/철도/항공/해운 노선 및 운행정보
종합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시스템	교통 부문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 정보 등
종합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부과시스템	단속정보, 과태료부과정보, 수납정보 등
물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동향 및 신고 정보, 육상·해상·항공 물류통계 등
물류	물류창고정보시스템	물류 업체 정보, 물류 창고 정보 등
물류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기록, 사고다발지역 위치정보 등
철도	철도산업정보센터정보시스템	철도기술 자료, 고속 및 일반철도, 지하철 등 영업 및 시설 통계 등
철도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철도안전 정보/지식 정보, 철도사고 통계현황 자료 등
도로	교통정보연계시스템	교통소통정보, CCTV영상정보, 돌발정보 등
도로	도로표지안내시스템	도로표지 정보, 도로망도 정보 등
도로	국도 ITS시스템	관내국도 교통정보 수집·연계 및 제공
도로	표준노드링크관리시스템	표준노드링크 구축·갱신 및 배포
도로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도로자료, 운행허가 현황 등
도로	교량 통합관리시스템	일반 국도 교량 정보관리, 교량 통계 및 분석자료 등
항공	항공정보포털	항공통계, 항공종사자, 항공산업정보 등
지리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구, 주택 행정구역경계, 교통 통계주제도 등
지리	국가공간정보포털	도시 개발 지역개발, 환경 자연 기후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7조의2(교통빅 데이터플랫폼의 구축·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은 교통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령으로 정한다.